

의안 번호	제3660호
----------	--------

## 김포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년 9월 3일 김포시장
-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9월 11일
- 다. 상 정 일 자 : 2025년 9월 19일
- 라. 의 결 일 자 : 2025년 9월 19일

### 2. 제안이유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 제한을 폐지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토지의 활용성을 확대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시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가로주택정비사업 건축물의 층수 제한 규정 삭제 (안 제18조 삭제)
- 나. 관리지역에서 시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공동 시행하거나, 천재지변 등에 의해 시장이 직접 시행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을 지정하여 시행하는 경우 임대 주택 건설 비율을 용적률 상향 전·후 차이의 100분의 15로 규정(안 제23조 제2항 신설)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수정안의 요지 : 법령에서는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100분의 15이상 100분의 30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 정하는 비율” 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정안 제23조제2항은 이를 100분의 15로 규정하고 있어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음. 이에 주거 안정과 서민 주거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 비율을 100분의 30으로 상향 조정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강화하고자 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9. 주문사항 : 없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제출안 1부, 수정안 1부

## 김포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중 “법 제43조의5제1항에 서”를 “법 제43조의5제1항에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법 제43조의5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5을 말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가로주택정비사업의 <u>건축물 층수</u>) 영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15층 이하로 한다.</p> <p>제23조(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 공급 및 인수) ① <u>법 제43조의5제1항</u>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p> <p><u>&lt;신 설&gt;</u></p>	<p style="text-align: center;"><u>&lt;삭 제&gt;</u></p> <p>제23조(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 공급 및 인수) ① <u>법 제43조의5제1항</u>에서 ----- -----.</p> <p>② <u>법 제43조의5제2항</u>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란 100분의 15를 말한다.</p>

# 김포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3660호
----------	--------

제출년월일 2025. .  
제출자 도시환경위원장

### 1. 수정이유

- 법령에서는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100분의 15이상 100분의 30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 정하는 비율”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정안 제23조제2항은 이를 100분의 15로 규정하고 있어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음. 이에 주거 안정과 서민 주거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 비율을 100분의 30으로 상향 조정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강화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안 제23조제2항의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5를 100분의 30으로 수정하여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높임.

# 김포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수정안

김포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3조제2항 “**법 제43조의5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5를 말한다.**”를 “**법 제43조의5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를 말한다**”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제 출 안	수 정 안
<p>제23조(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 공급 및 인수) ② 법 제43조의5 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란 100분의 15를 말한다.</p>	<p>제23조(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 공급 및 인수) ② 법 제43조의5 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란 100분의 30를 말한다.</p>